보 고 사 항

□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9. 2. 2

(화순군의회 공고 1999-2호)

< 공고내용 >

- 집회일시 : '99. 2. 8 (月) 오전 10 시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각종 의안 발의 현황

○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- '99. 2. 2 의원발의

ㅇ발의자 : 문팔갑 의원외 2 인

ㅇ회 기 : '99. 2. 8 (月) ~ 2. 11 (木) (4일간)

○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- '99. 2. 2 의원발의

ㅇ발의자 : 문팔갑 의원외 2 인

ㅇ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○ '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- '99. 2. 2 의원발의

ㅇ발의자 : 문팔갑 의원외 2 인

ㅇ발의이유

-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'98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실·과·소장으로 부터 청취하고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례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
- '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등을 제시하는 등 '99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 발의 함.

○ '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일정

보고일시	보 고 대 상	보 고 자
'99. 2. 8 (月) 10:00	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	해당 실·과장
'99. 2. 9 (火) 10:00	민원봉사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	해당 과장
'99. 2. 10(水) 10:00	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	해당 과장
'99. 2. 11(木) 10:00	건설과, 도시경제과, 농업기술쎈터, 보건소	해당 과·소장

○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 - '99. 1. 29 군수제출

o 제안이유

- '98. 2. 24일 제정·공포된 『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
-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·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·운영하는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

o 주요골자

- 설립기관의 범위 :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(안 제2조)
- 가입금지 공무원 : 지휘·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, 인사, 예산, 경리, 물품출납, 비서, 기밀, 보안, 경비, 운전업무 종사자,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 종사자(안 제3조)

※ '99. 1. 3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2. 4 군수제출

o 제안이유

- 지난 7.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(대통령령 제15836호)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우리 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해 외국인이

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용어수정(안 제6조 제1항 제1호)

 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 → 부동산 시가표준액

- 건축물이 적법한 경우에만 대부료 및 사용요율 1000분의 25적용 (안 제23조 제6항)

  ·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→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(건축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함.)

-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개정

  ·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매각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연 4%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. (안 제22조 제4항)

  ·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는 투자금액에 따라 50% ~ 전액 감면(안 제23조의 3)

- 대부료 납기 및 공유재산 관련 각종 미납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

  · 납 기 :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선납(농경지 경작의 경우로서 1년 이상 대부는 농지수입금 확정후 60일 이내 납기) (안 제26조)

  · 연체율 :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, 교환차액, 변상금의 납기내 미납시에는 연 15% 연체율 적용(안 제28조)

- 수의계약 매각범위 확대(안 제39조의 2)

  ·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때는 10,000제곱미터 이하(신설)

  · 폐천부지의 경우 읍면지역의 매각은 6,600제곱미터 이하(신설)

※ '99. 2. 4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. 29 군수제출

o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(안) '99. 1. 1일부터 시행되어 군세 일반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사용코자 함.

o 주요골자

- 제20조(세율)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 "개인"을 "개인의 세율"로 하고, 나목중 "개인"을 "개인의 표준세율"로 하고, 제2호 "법인"을 "법인의 표준세율"로 개정
- 제37조(납기와 징수) 제3항중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"를 "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"하고 동항에 제1호, 제2호, 제3호를 신설

※ '99. 1. 3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. 29 군수제출

o 제안이유

-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(경감)코자 함.

o 주요골자

-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동조 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3년간 50%를 경감한다.
- 제1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
- 제2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, 다만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.

※ '99. 1. 30 총무위원회 회부

○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- '99. 2. 4 군수제출

ㅇ 제안이유

- 화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ㅇ 주요골자

- 화순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군, 사업자, 군민의 책무 및 언론, 학교, 군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함. (안 제2조~제9조)
-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 (안 제10조)
-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)
-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방지 비용 및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. (안 제19조)
- 군수는 군민, 사업자, 민간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,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0조)
- 군수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1조)

※ '99. 2. 4 총무위원회 회부

□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'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요구의 건
4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5. '99년도 군정주요시책 추진방향 보고 청취

6. '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'9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

(기획예산실, 총무과, 재무과)